

LH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인천생활 입주자 모집공고

[모집공고일 : 2025.12.18.]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양한 입주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간을 구성하고,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어반업사이클링 협동조합)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임대 및 운영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주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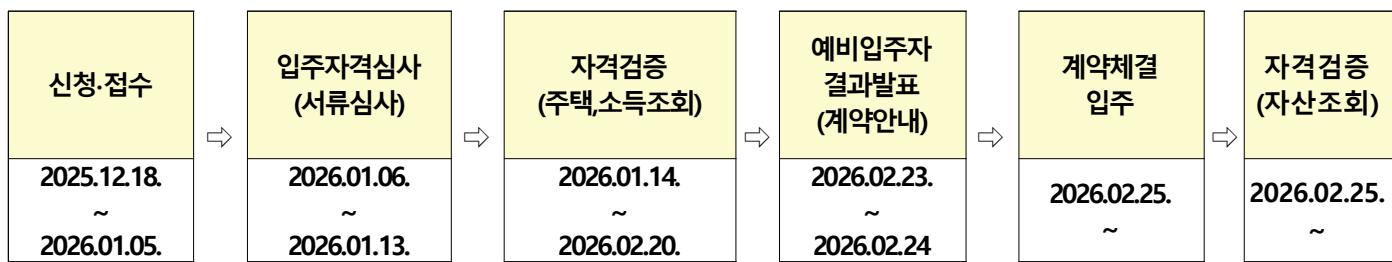
- **(기준일)**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12.18.**)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소득·자산 기준 충족 및 차량 미소유자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미혼 청년(**1985.12.12.~2006.12.11.**)이어야 합니다.
(※ 차량 및 주택 소유자 부적격 판명 및 임대기간 동안 소유 불가,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확인)
- **(모집인원)** 금회 모집은 계약포기·해약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공급호수의 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공급호수는 총 230호로 '유형①-대학교 기숙사형 110호', '유형②-일반청년형 110호', '유형③-자립 준비청년 10호'이며 금회모집은 유형①,②만 해당)
- **(중복신청 불가)** 동일 기간 내 진행되는 인천생활 모집 공고 중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년 거주)(※ ①대학교 기숙사형은 졸업생 신청 불가하며, 졸업 이후에는 연장 재계약 불가)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의무)**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신청 전 아래 유의사항 확인 바랍니다.
 - 청년 1인 거주공간입니다. (공간쉐어, 동거, 전대 등 불가)
 - 본 주택은 비주택 시설(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리모델링한 주택으로, 일반적인 신축 주택건물에 비해 생활 및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불가합니다.
 - 기혼자,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 내 정기 주차 불가하고, 지인 방문 시 외부차량 주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및 공통관리비와 별도로 개별관리비(전기, 수도 등 공과금)가 청구되며 비용 부과방식 등 상세내용은 추후 임대차 계약 시 개별 안내합니다
 - 운영기관(어반업사이클링) 및 입주자간 전환보증금은 입주자 보증금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입주자 최초보증금 납부는 보증금 전용계좌 또는 LH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좌안내는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 입주 신청에 관련한 전체 문의는 이메일 접수 incheon230@gmail.com

1

입주자 모집 일정 : [인천생활]

■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5.12.18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 및 주택개방, 계약 및 입주시기 등은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신속한 입주를 위해 주택, 소득 요건을 먼저 검증하여 계약 및 입주 입주 이후 자격검증(자산조회)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3개월이내 퇴거(화약서 징구예정)

2

공급주택

*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2021년 비주택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종전 숙박시설을 리모델링 공사 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 [인천생활] 주택 소개 및 자세한 정보는 어반업사이클링 협동조합 홈페이지(www.urbanup.co.kr) 및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주택개요

주택명	인천생활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4-11	
건물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사용승인일: 2016년 12월 16일 - 리모델링 후 사용승인일: - 2024년 11월 1일 - 연면적: 8,869.34m² - 건물면적: 지하 3층 ~ 지상15층 - 주용도: 업무시설(주거용오피스텔) 230호 근린생활시설 1호 - 주거 전용면적: 17.50m² ~22.41 m² 	

공급대상		면적(m ²)			임대조건(원)		구조
타입	호	공급(계)	전용	공용	보증금	임대료	
19A	81	28.03	17.50	10.53	3,260,000	153,760 ~ 157,340	원룸
19B	108	28.29	17.69	10.60	3,260,000	157,380 ~ 162,850	원룸
22A	13	32.25	19.60	12.65	3,720,000	172,820 ~ 185,390	원룸
22B	1	32.68	19.74	12.94	3,720,000	188,170	원룸
22C	27	36.09	22.41	13.68	4,190,000	195,670 ~ 202,640	원룸
총 230호							

※ 탑입, 층 구분 없이 전 호실 추첨방식으로 배정

■ 주택 기본시설

설치시설 및 부대시설

전용세대 시설

기본옵션	냉장고, 세탁기, 2구 전기쿡탑, 싱크대, 전자레인지, 시스템 에어컨(FUC에어컨), 불박이장, 블라인드, 책상, 신발장, 도어락, 침대/매트리스 ※ 시스템 에어컨(FUC)은 기존시설 설치 제품
난방방식	지역난방

공용시설

1F	커뮤니티룸, 코인세탁실, 공용냉장고, 우편함, 무인택배함, CCTV,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15F	테이블, 의자, TV, 공용주방

공용 관리비 (예정)

항목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유지관리비(소방/승강기/전기), 수선유지비, 기타
비고	공용 관리비는 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용 및 부과 방식 등 상세 내용은 추후 임대차 계약 시 안내 예정

■ 주택내부(전용공간)



19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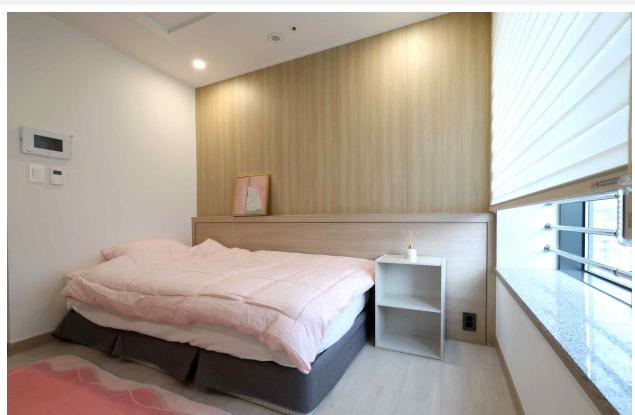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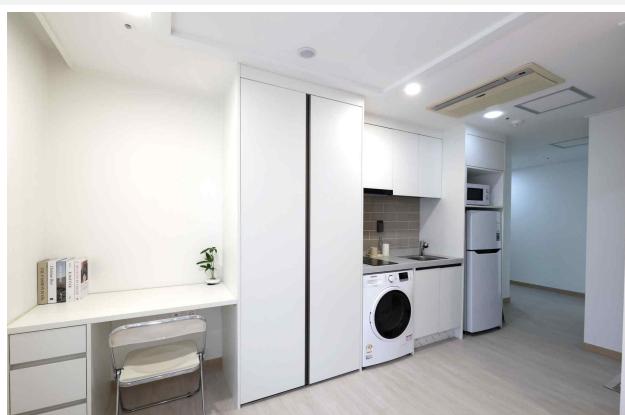
19B형



22A형



22B형



22C형



욕실

■ 주택내부(공용공간)



커뮤니티 시설



코인세탁소

대형 세탁기, 대형 건조기



창업 카페, 밀키트 마켓

■ (기본자격) 모집공고일(2025.12.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미혼 청년(1985.12.12.~2006.12.11.)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 청년 특화주택이므로 청년 1인만 거주 가능

※ 차량 미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5항 3호에 근거 임차인의 자격요건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 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제외)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4,317,797	6,024,703원	7,626,973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기준 100% 금액(3,598,164원)에 가산)

○ (자산기준) * 계약 이후 자격검증(자산조회)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3개월이내 퇴거(계약서 징구예정)

- 해당 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

구 分	기준 금액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신청자 본인이 세대원 보유 세대주일 경우 세대(세대 내 본인과 부모) 자산 기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일 경우 본인 자산 기준

※ 신청자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 배우자의 직계존속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직계 존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기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기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입주자 선정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 100점 (유형 ① 대학교 기숙사형 입주세대 : 정량적 평가 35점, 정성적 평가 30점, 가점 35점 / 유형 ② 일반 청년형 입주세대 : 정량적 평가 40점, 정성적 평가 20점, 가점 40점) 단, 입주 신청자는 '3. 입주자격'의 자격요건에 반드시 충족해야 함

○ 평가 방법

- 정량적 평가는 어반업사이클링 협동조합이 평가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진행함
-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회가 활동계획서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함
- 심사위원회는 어반업사이클링 2인과 LH 1인으로 구성함
- 동점자 발생 시 정량적 평가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입주자 선정

1) 대학교 기숙사형 입주세대 평가 항목

- 전체 230세대 중 110세대 내 선별
- 해당 항목 지원 자격 요건 : 어반업사이클링 및 LH와의 협약을 체결한 인근 대학교의 재학생 청년

협약 체결 대학 목록	
재능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한국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

※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인근 타 대학 재학생은 아래 '일반 청년형 입주세대'로 접수 가능

○ 정량적 평가 : 35점

정량적 평가 항목 및 기준		배 점	합 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35	35
	110% 이하	30	
	120% 이하	25	

※ 정량적 평가 심사를 위한 필요 서류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세목전체, 세부내역포함), 건강보험납부증명서(직전 12개월보험료와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 대학교 기숙사형 입주세대 자격 요건 입증을 위한 필요 서류
 - 인천생활 기숙사 업무 협약 대학의 재학증명서, 입학증명서 등

○ 정성적 평가 : 30점

정성적 평가 항목 및 내용		배점	합계
인천생활 커뮤니티 활동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생활 청년특화형 주택은 지역 대학 및 근로자 등 지역 청년들 간의 커뮤니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특화형 주거공간으로, 단순한 주거를 넘어 학업, 창업, 교류를 위한 청년들의 생활 기반이 되는 플랫폼입니다. 인천생활이 지역 청년 공동체의 중심지가 되기 위하여 입주 이후의 커뮤니티 활동은 필수입니다. ○ 인천생활 입주 후 입주자 간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와 이웃과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또는 본인 재능 나눔 및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와 로컬브랜딩 창출 아이디어 실행계획을 육하원칙에 맞게 1,500자 이내로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30

※ 정성적 평가 심사는 커뮤니티 활동계획서의 취지, 진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위원회가 평가함

※ 어반업사이클링 홈페이지(www.urbanup.co.kr)와 사회주택협회(<http://www.socialhousing.kr/>)의 커뮤니티 내용 참고

○ 가점 : 35점

가점 항목 및 기준		배 점	합 계
가점	① 비수도권 거주자(주민등록지)	5	35
	② 수급자 가구(생계, 의료, 주거), 가족	10	
	③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10	
	④ 차상위 계층	10	

※ 가점 평가 심사를 위한 필요 서류 ①~④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모두 제출)

① 비수도권 거주자 : 주민등록표 등본

②~④ 주거 취약 계층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2) 일반 청년형 입주세대 평가 항목

- 전체 230세대 중 110세대 내 선별

○ 정량적 평가: 40점

정량적 평가 항목 및 기준		배 점	합 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40	40
	110% 이하	30	
	120% 이하	20	

※ 정량적 평가 심사를 위한 필요 서류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세목전체, 세부내역포함), 건강보험납부증명서(직전 12개월보험료와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정성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항목 및 내용		배점	합계
인천생활 커뮤니티 활동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생활 청년특화형 주택은 지역 대학 및 근로자 등 지역 청년들 간의 커뮤니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특화형 주거공간으로, 단순한 주거를 넘어 학업, 창업, 교류를 위한 청년들의 생활 기반이 되는 플랫폼입니다. 인천생활이 지역 청년 공동체의 중심지가 되기 위하여 입주 이후의 커뮤니티 활동은 필수입니다. ○ 인천생활 입주 후 입주자 간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와 이웃과 함께하고 싶은 프로그램 또는 본인 재능 나눔 및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와 로컬브랜딩 창출 아이디어 실행계획을 육하원칙에 맞게 1,500자 이내로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20

※ 정성적 평가 심사는 커뮤니티 활동계획서의 취지, 진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위원회가 평가함

※ 어반업사이클링 홈페이지(www.urbanup.co.kr)와 사회주택협회(<http://www.socialhousing.kr/>)의 커뮤니티 내용 참고

○ 가점 : 40점

가점 항목 및 기준		배 점	합 계
가 점	① 인천 소재 공단 근로자	10	40
	② 수급자 가구(생계, 의료, 주거)	10	
	③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10	
	④ 차상위계층	10	

※ 가점 평가 심사를 위한 필요 서류 (①~④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모두 제출)

① 인천 소재 공단 근로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신청일 기준)

②~④ 주거 취약 계층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안내된 일정은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받습니다.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
- 필수 제출서류 원본 제출 안내 (임대차계약서, 개별 안내 예정)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4-11, 1층 1호 인천생활

절 차	일 정	내용 및 공지	비고
모집공고	2025.12.18.	어반업사이클링 홈페이지(www.urbanup.co.kr)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신청접수	2025.12.18. ~ 2026.01.05.	①,② 모두 완료하여야 접수처리 가능 ① [인천생활] 입주자모집 구글 신청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TDIMipQT5kGL3hMJHbk5_TwZq_tDKNyUSgIZ80V2II-8vXQ/viewform) ② 필수서류(5.제출서류 참조)스캔하여 PDF로 변환 후 이메일(incheon230@gmail.com) 제출	마감일 18:00시 까지
입주자격심사 (서류심사)	2026.01.06. ~ 2026.01.13.	구글 신청서 및 필수 제출 서류	
자격검증 (주택, 소득)	2026.01.14. ~ 2026.02.20.	주택 소유 여부, 전년도 소득 조회	
결과발표 (계약안내)	2026.02.23. ~ 2026.02.24	계약체결 안내 (개별 안내)	
계약체결, 입주개시	2026.02.25.~	개별 안내	
입주	2026.02.25.~	입주	

* 신속한 입주를 위해 주택, 소득 요건을 먼저 검증하여 계약 및 입주, 입주 이후 자산 요건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3개월 이내 퇴거(계약서 징구예정)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발표 및 주택개방, 계약 및 입주시기 등은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신청에 관련한 전체 문의는 이메일 접수 incheon230@gmail.com

- 입주신청서 및 활동계획서의 양식은 제공하지 않으며, 인천생활 입주자모집 구글 신청서 (<https://forms.gle/6pErAMK4Fq6Qf9FY6>)로 신청하면 됩니다.
- 공고일(2025.12.18.)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제출서류는 아래 항목 순서에 맞게 pdf파일로 전체 묶어서(합본)하여 incheon230@gmail.com 제출
예시 : 파일명 : 홍길동(일반 청년형)_생년월일 / 파일명 : 홍길동(대학교 기숙사형)_생년월일

제출서류		내 용	발 급
전원 제출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 및 검증대상 전원 서명 ※ 반드시 모든 동의란에 체크 	제공 (불임양식)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 및 검증대상 전원 서명 반드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모두 서명 	제공 (불임양식)
	3.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제공 (불임양식)
	4.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5. 주민등록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에 한함) 	행정복지센터
	6.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목 전체, 세부내역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지센터
	8. 건강보험납부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 12개월 보험료,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국민건강보험 공단
	9.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발생처 공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자 모두 표기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내 용	발 급
대학교 기숙사형 입주 시 제출	재학증명서 혹은 입학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생일 시 재학증명서 발급 및 제출 필수 신입생일 시 입학증명서 발급 및 제출 필수 	각 대학 학사행정처

제출서류		내 용	발 급
가점사항 해당 시 제출 (해당자에 한함)	수급자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점사항 평가용 서류, 해당 시 각 증명서를 발급하여 동시 제출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일반 청년형 입주 시) 인천 소재 공단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업 인사팀 행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일 이후 발급서류 필수 	

※ 입주자 선정을 위한 정량적 평가심사를 위해 어반업사이클링 협동조합이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3.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확인)

※ 입주 신청에 관련한 전체 문의는 이메일 접수 incheon230@gmail.com

당해 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자격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소득,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르므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대출가능 여부는 시중은행에 직접 확인) 임대인(운영기관)에게 대출가능 상품(별도 협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당해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자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여부 및 가능 범위는 해당 주택 운영기관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2024.09.30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운영기관(어반업사이클링협동조합)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본인의 책임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2025. 12. 18.

어반업사이클링 협동조합

(문의 및 상담) 이메일 접수 incheon230@gmail.com

Tel. 02-3390-9820 (전화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14:00 – 17:00 / 주말, 공휴일 제외)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 방법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②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²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m² 이하의 주택 또는 20m²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m²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p>*「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p>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총자산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구분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 근로 소득	<p>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일용 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p>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회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p>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총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 기구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국토부 주택전산망			
	금융자산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td> <td style="width: 50%;">- 금융정보 조회결과</td> </tr> <tr> <td>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td> <td></td> </tr> </table>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 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u>청약신청일로부터</u> <u>신청자는 6개월,</u> <u>당첨(예비)자는 5년,</u> <u>계약자는 영구</u>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을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 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u>국토교통부장관</u>	<u>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u>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u>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u>	<u>임대주택 입주자 관리</u>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세대원수	
<u>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u>	<u>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u>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u>사회보장정보원</u>	<u>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u>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u>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u>	<u>거주자 실태조사</u>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u>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u>	<u>입주자 만족도 조사</u>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u>카드사·결제대행사</u>	<u>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u>	주소, 계약자번호	
<u>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u>	<u>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회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u>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u>우정사업본부</u>	<u>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u>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u>전산관리지정기관</u>	<u>임차인 증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u>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u>주택도시기금 대출정보 보유기관</u>	<u>주택도시기금 대출 검색</u>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미동의	
-----	--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미동의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종양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종양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종양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기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기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25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